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공갈미수

[제주지방법원 2022. 10. 26. 2022고단373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2인

【검 사】전철호(기소), 문승기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영민(피고인 모두를 위하여)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,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, 단기 1년 6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, 단기 2년에 각 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